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기 획 재 정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집행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정관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예산실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대규모 국제행사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유재산특례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유재산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111명”을 “113명”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2025년 4월 30일”을 “2026년 4월 30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083”을 “1,087”로, 일반직 계 “1,073”을 “1,077”로, 3급
또는 4급 이하 “1,030”을 “1,034”로 한다.

별표 3 2)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정관리국 1개 과	2명
---------------	----

별표 3의2 제목 중 “제32조제4항,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을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중 “2025년 4월 30일”을 “2026년 4월 30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147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1명 ^을 ,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113명-----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공공조달정책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조달정책과를 둔다.	<삭 제>
② 공공조달정책과에 과장 1명	

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총괄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3.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
5. 공공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및 공공조달종합계획의 수립
7.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8. 정부조달업무에 대한 지도·교육
9. 공공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0.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제도의 기획
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조달청 세부기준 제정·개정 협의
1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3. 과장급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	
14.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	
④ 공공조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국유재산협력과) 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제33조의2(국유재산협력과) ① ----- ----- ----- 20 26년 4월 30일-----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한시정원)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삭 제>
대통령령 제31473호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31473호 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 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 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 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 제3호의 정원 1명(4 급 1명)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3월 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 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 으로 본다.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83</u>	• <u>1,087</u>	+4
일반직 계	• • <u>1,073</u>	• • <u>1,077</u>	+4
3급 또는 4급 이하	• • <u>1,030</u>	• • <u>1,034</u>	+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7